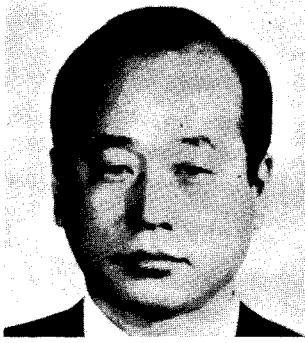


농림수산부고시제87-15(87.4.8)

종계 및 부화장 관리요령 제정

농림수산부 ·
중소가축과장
이 인 형



따라서 종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화업의 경우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양계업 중 종계나 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림수산부고시 제 87-15(87.4.8)호로 종계 부화업 관리요령을 새로 제정 고시하였는데 그 제정배경 및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업계나 양계농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관리요령 제정배경 및 경위

1. 머리말

우량한 병아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우수한 종계가 필요하며 종계는 일반 닭과는 다른 특별한 시설과 사양관리기술이 필요하다.

닭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인공적인 병아리 부화와 인공육추를 하여야 하며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 “닭백혈병”, “닭뇌척수염(A.E)” 등의 전염병은 알을 통하여 전염되므로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하에서 종란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량한 병아리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과 같이 닭이 개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아리부터 우량한 것을 사육하여야 한다.

또한 아무리 능력이 좋은 개체에서 종란을 생산하였다 해도 부화시설이 좋지 않거나 기술이 부족하면 우량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없으며 부화업의 위생관리가 불량할 경우에는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건진한 양계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혈통이 보증될 수 있고 위생적으로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생산량도 수요에 알맞는 적정량이 생산공급되어야 한다.

닭은 그간 생산성에서는 타가축보다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생산조절기반이 구축되지 못하여 수급불안정에 의한 연중가격진폭이 심하여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5.4.27 축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가축의 개량과 축산물수급조절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종계·부화업 관리요령은 개정된 축산법에 근거하여 닭의 능력개량과 양계산물 생산조절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이 요령은 그간 양계에 관계되는 학계, 업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개량협의회 양계분과위원회 전문가들로부터

터 자문을 얻어 제정된 것으로 종계나 부화업
계에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
로 양계업의 항구적인 안정화를 기해야 하겠다
는 의지가 집결된 것이라고 하겠다.

3. 관리요령 요지

종 계 업

○ 종계업에 대한 양도·임대·시설변경·휴업·
폐업 등에 관한 세부절차와 요령을 명시하고 특
히 종계수수가 등록수보다 20% 이상 증감될 경
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 종계업자는 다음 년도의 종계사육계획을 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생산과다 우려시에는 생산조절
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종계의 일반검정을 의무화하고 미검정된 닭은
종란을 생산·판매치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자용으로 닭을 수입하는 자와 국내에
서 육종하는 닭에 대하여는 경제능력검정을 의
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검정결과 능력이
불량한 닭은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 종란의 판매는 부화업자에게만 국한하고 종계
사도 일반계사와 50m 이상 격리시키며 사육단
계별, 계종별, 용도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사용
종계는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 등 주요 전염병
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혈청항체검사를 실시
(세부요령은 별도로 정함)하는 등 위생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 매년 2회(2, 8월)에 걸친 정기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공표제도 실시로 자율
적인 관리개선 참여를 유도하였다.

부 화 업

○ 부화업의 양도, 임대, 시설변경, 폐업·휴업에
대한 절차와 요령을 명시하고 부화업의 허가는
기존능력과 양계산물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고 매년도 병아리 생산계획서 제출을 의
무화하였으며, 병아리의 생산조절기능을 마련하
였다.

○ 종란의 사용제한과 종자용 병아리의 판매제한
(종계업자, 시험연구용, 신규로 종계업등록에 필
요한 자) 규정을 두었으며 병아리 생산실적은

순기별로 보고(시군을 통하여 농림수산통계사
무소 전산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부화업에 대한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소
독(주1회 이상)실시와 병아리 판매전 예방접종
실시 등 위생조건을 강화하였다.

○ 병아리 계통보증서 발급의 철저한 이행과 병
아리 생산·판매대장 기록 비치의 의무화하는
한편 종계업과 같이 연2회(2, 8월)에 걸쳐 정기
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는 공표하
도록 하였다.

이 요령의 시행일자는 공포일(87. 4. 8)로부터
시행하되 새로 시설하여야 할 사항은 88. 6. 30
까지로 준비기간이 마련되어 있다.

농림수산부고시 제87-15호

축산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등록(허가)된 종
계업(부화업)에 대한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 4. 8.

농림수산부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닭의 개량을 촉진하
고 양계업의 안정적 경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계업자”라 함은 축산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부화업자”라 함은 축산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실용계”라 함은 종계에서 생산된 닭을 말
한다.

4. “닭육종농장”이라 하면 종자용 닭을 생산할
목적으로 닭을 육종하는 농장을 말한다.

5. “경제능력검정”이라 함은 종계에서 생산된
실용계에 대한 산란 또는 산육능력 등에 관한 생
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
한다.

6. “일반검정”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업 등록에 필요
한 종계의 확인검정을 말한다.

7. “종란”이라 함은 실용계 또는 종자용 병아리를 부화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알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축산법 제 1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계업과 축산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부화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종계업

제 4 조 종계업등록 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계산물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등록업체의 등록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종계업자는 종계의 갱신 또는 폐사 등으로 사육수의 20% 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종계업의 양도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시설공사 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계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일자를 명기하여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계업 등록증을 갱신 교부하고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종계업을 등록하거나 휴업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종계사육 및 생산계획보고 ① 종계업자는 매년 10월중 다음 연도의 종계사육계획과 월별, 용도별, 세대별 종란생산계획을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계획이 등록규모보다 과다히 초과하여 양계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육조절이나 생산조절을 명할 수 있다.

제 6 조 일반검정 ① 종계업자는 종란을 생

산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일반검정을 받아야 하며, 일반검정을 받지 아니한 닭으로부터 종란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관에서 시행하되 세부적인 방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축검정요령에 의한다.

③ 검정기관은 일반검정결과에 대하여 매월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함과 동시에 신문, 잡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결과를 종계업등록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일반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종계로 인하여 등록규모가 초과될 때에는 양계산물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육조절을 명할 수 있다.

제 7 조 경제능력검정 ①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 규정에 의거 국내 닭육종농장 및 외국으로부터 종자용으로 닭을 수입한 자는 닭의 종류별로 매년 경제능력검정기관에 출품하여 그 능력을 검정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립기관이나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한 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능력검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검정요령에 의한다.

③ 검정기관은 전년도 닭의 수입과 국내 육종농장의 국내산 닭의 생산을 감안하여 대상자별 검정계획을 검정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용도별로 닭의 경제능력검정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검정결과에 대하여는 신문·잡지에 공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 수입되지 아니한 새로운 종류의 닭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종란을 수입하여 경제능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능력이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 되는 닭에 한하여 수입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종란생산 및 판매 ① 종계업자는 생산한 종란을 부화업자에게만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하는 종란에 대하여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종란혈통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2호 서식에 의한 병아리(종란) 판매·공급에 관한 반출입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월 종란반출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시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호에 의한 종란의 생산 보고내역을 검토하여 제5조에 의한 생산계획과 전년도 생산실적 등을 종합분석하여 양계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종계의 사육조절을 명할 수 있다.

제 9 조 종계사육시설 및 위생관리 ① 종계사는 일반실용계사와 50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② 종계사는 사육단계에 따라 육추사, 육성사, 성계사로 구분하고, 육추사는 타계사와 별도로 격리하여야 하며, 동일 계사내에 세대, 계종, 용도가 다른 종계를 사육해서는 아니되며, 이의 구분을 표시하는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종계사육장내에는 갱의실, 소독조 및 소독기구, 온도조절이 가능한 종란저장고가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표시하는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종계업자는 종계에 대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위생연구소 또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로부터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 등에 대한 혈청항체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세부실시방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 정하는 요령에 의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혈청검사기관의 장은 매분기 검사실적을 다음 분기 15일 이내에 도지사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 종계업자는 사육하는 종계에 대하여 종축검정요령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이 초과된 종계에 대하여는 도태시켜야 하며, 종란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종계업정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종계업에 대하여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시설개선을 요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하고 기간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축산법 및 “축산법에 의한 허가·면허 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농림수산부 훈령제623, '86. 2. 28)에 의거 조치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완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조사내용중 예방접종과 혈청검사결과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종계업자 명단을 신문이나 잡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화업

제11조 부화업허가등 ① 부화업허가는 기존부화업의 생산능력과 양계산물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부화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화기의 증설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개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화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일자를 명기하여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화업허가증을 갱신, 교부하고 종전의 부화업허가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병아리생산계획보고 ① 부화업자는 매년 10월중 다음 연도의 병아리생산계획을 월별·용도별·세대별로 구분하여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획이 전년도 실적 등과 비

교하여 양계산물 및 가격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산조절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종란의 사용제한 종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써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이 있고 과다히 크거나 적지아니하며, 청결하고 기형이나 난각이 파손되지 아니한 것.

2. 추백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색결과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것.

제14조 병아리 생산판매 ① 종자용병아리(P.S)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1. 종계업자
2. 국·공립기관이나 시험연구용으로 필요한 자
3. 신규로 종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단,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실수요자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병아리 실수요자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법규정에 의한 종계업 시설기준여부를 확인하고 종계 이외 다른 기준이 종계업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종자용 병아리를 생산 판매하는 부화업자는 매월 생산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일반검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화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병아리(종란)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제7호 서식에 의한 병아리 생산실적을 매순기별로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군 농림수산통계출장소 전산시설을 통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부화업시설 및 위생관리 ① 부화업자는 사무실, 부화실, 발생실, 초생추 감별(보관실), 오물처리실 소독조 및 소독기구를 비치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부화업시설에 대하여는 주1회이상 정기적

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자와 출입차량, 각종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화실과 격리된 장소에서 소독하여야 한다.

③ 산란용 병아리에 대하여는 출하·판매전에 “마택병” 등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 정하는 주요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병아리 계통보증서등 ① 부화업자는 판매하는 병아리에 대하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병아리 계통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교부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부화용 종란의 반입과 병아리 생산·출하내역에 대하여는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부화업 정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정기적으로 부화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시설개선을 요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하고 기간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축산법 및 축산법에 의한 허가·면허 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농림수산부 훈령 제623호 86. 2. 28)에 의거 조치한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및 제2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완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예방접종 및 위생관리상태와 혈통보증서 발급 등 일반관리상태가 양호한 부화업에 대하여는 신문·잡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 시행당시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종계업 시설과 제15조 제1항에 의한 부화업시설을 새로이 하여야 하는 자는 '88. 6. 30까지 이 요령에 적합한 시설을 하고, 동결과를 10일 이내에 등록(허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